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금수산태양궁전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태양의 성지입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인민들의 백옥 같은 마음과 마음들이 안아올린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입니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채우시고 공장과 농촌, 어촌을 찾고 찾으시며 환하신 미소로 인민들의 소박한 말도 귀중히 들으시고 정책에 담아 주시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모습을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간직하고 살려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과 진보적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의지입니다.

전체 조선민족과 외국의 벗들은 금수산태양 궁전을 태양의 집으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끊임없이 찾아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기금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대대손손 빛내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오란동  
Add: Othan-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K

전화번호(Tel): +850-2-18111 ext3818133  
전자우편(E-Mail): KKF @ star-co.net.kp  
팩스(Fax): +850-2-3814503

1-

## 김일성김정일기금 KIM IL SUNG-KIM JONG IL FOUNDATI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평양  
주체103(2014)년  
Pyongyang, DPR Korea  
Juche103(2014)



혁명의 성산 백두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나라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해마다 많은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수많은 구호물자들을 보내 주신 민족의 어버이,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인류에게 운명개척의 길을 환히 밝혀 주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십니다.



# 김일성김정일기금 규약

## 제1조. 기금의 창립

김일성김정일기금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흡모하고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 류의 한결같은 의사와 네원을 반영하여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과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창립되었다.

## 제2조. 기금의 사명

김일성김정일기금의 사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주체의 최고 성지로 대대손손 빛내이며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교육, 보건, 환경보호, 인류의 평화와 진보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다.

## 제3조. 기금의 본부와 지부

김일성김정일기금의 본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두며 해외에 지부를 둔다.

## 제4조. 기금의 최고지도기관

- 김일성김정일기금의 최고지도기관은 리사회이며 리사회와 리사회사이에는 사무국이다.
- 리사회는 리사장, 부리사장, 리사들을 선거한다.
- 리사회성원들은 규약을 준수하고 문제토의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지며 리사회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리사회는 10~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가 할수 있다.
- 리사회의 임기는 4년이며 년에 1차이상 리사회를 소집한다.
- 리사회는 성원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들을 두며 부서를 새로 나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사무국에 있다.

## 제5조. 리사회의 임무

- 기금의 활동정형을 총화하고 기금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한다.
- 규약을 제정 및 수정보충한다.
- 리사회성원들에 대한 임무분담을 한다.
- 기금의 발전방향과 계획을 심의결정한다.
- 기금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제6조. 사무국의 임무

- 사무국은 리사회와 리사회사이 기금의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민적 풍모와 업적을内外에 선전한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교육, 보건, 환경보호, 인류의 평화와 진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 기금선전을 위한 각종 출판물을 제작, 인쇄,

발행한다.

- 기부금을 접수하고 관리하며 지출한다.
- 기부증서 제작 및 수여사업을 조직한다.
- 기금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기금예산을 편성한다.
- 다른 나라 기금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한다.

## 제7조. 회원

- 회원은 기금의 비상설성원으로서 회원규정을 승인하고 기금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될수 있다.
- 회원으로 가입할것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은 사무국에 통지하고 해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및 회원단체로 될수 있다.
- 회원은 제정된 가입등록비와 회원비를 바쳐야 한다.

## 제8조. 기부

- 기부에는 국적과 민족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심을 안고 기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할수 있다.
- 기부는 현금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현금으로 표현 및 전환시킬수 있는 각종 재산으로도 기부할수 있다.

## 제9조. 기부금관리

- 기금은 기부금을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부받은 재산은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 시켜 리용한다.
- 기금은 기부금의 리용정형을 매해 조직하는 리사회에서 공개한다.
- 기금은 자체의 재정회계체계를 세운다.

## 제10조. 기부자에 대한 우대

- 기부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기금 리사회가 발급하는 기부증서를 수여받는다.
- 기금사업에 특출한 기여를 한 기부자들에게 기금리사회의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기부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에서의 모든 활동의 편의를 보장해준다.

## 제11조. 경제활동

기금총회사를 설립하고 자체의 경제무역활동으로 지속적인 자금확보를 실현한다.

## 제12조. 기금의 표기와 마크

- 기금의 조선어표기는 《김일성김정일기금》으로, 영문표기는 《KIM IL SUNG – KIM JONG IL FOUNDATION》으로, 약칭은 《KKF》로 한다.
- 기금은 환호하는 사람들이 둘러싼 지구의 중심에 타오르는 화불을 형상하고 조선어와 영어로 된 기금명을 새긴 마크를 기금의 공식마크로 한다.